
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학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431
--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6. 6. 23.

발의자 : 이학재 · 유승민 · 김세연

김광림 · 함진규 · 이은권

민홍철 · 황주홍 · 홍철호

주광덕 · 이우현 · 곽상도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전자상거래 및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결제의 증가 등으로 상거래 환경이 급변하고 있음. 특히 핀테크(FinTech)는 간편결제, 해외 송금, 환위험 제거, 해외 역직구 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소상공인이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음.

그러나 많은 소상공인이 관련 정보나 인프라 등의 부족으로 현대화된 상거래시스템의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.

이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지원을 위한 사업에 전자상거래 활성화 및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결제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현대화 지원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(안 제9조제3호 신설).

법률 제 호
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
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전자상거래,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 등의 전자상거래 현대화 지원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) 중소기업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.	제9조(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) ----- ----- ----- -----.
1. · 2. (생 략) <u><신 설></u>	1. · 2. (현행과 같음) <u>3. 전자상거래,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 등의 전자상거래 현대화 지원</u>
<u>3. (생 략)</u>	<u>4. (현행 제3호와 같음)</u>